

제24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

2014. 11. 12.

임실군의회의회장

1. 개정이유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행정기구의 명칭변경, 분장사무 조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본청 명칭변경 및 분장사무 조정

- 지역농업특화사업단⇒농업정책과, 축산치즈과 ⇒축산치즈산림과
문화관광산림과⇒문화관광체육과, 주민생활복지과⇒ 주민복지과
- 기존의 문화관광산림과의 산림업무를 명칭변경된 축산치즈산림과로 이관
- 환경보호과 상·하수도, 정수장업무를 신설된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

나. 사업소의 폐지·신설 및 분장사무 조정

- 환경사업소 폐지 및 상하수도사업소 신설
- 폐지된 환경사업소 업무를 환경보호과로 이관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4. 10. 27 ~ 2014. 11. 3)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없음(비행정규제)
- 3)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사유서)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제외법령 해당)
- 5) 관련법령 발췌문 : 붙임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16조에 따라 임실군(이하“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과장·담당관의 직급 등) ① 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실장·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장·과장·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의료원장·농업기술센터의 소장과 사업소의 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군 본청

제3조(실·과 등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농업정책과, 축산치즈산림과, 문화관광체육과, 안전관리과, 행정지원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주민복지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민원봉사과를 둔다.

② 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기획감사실장

- 가. 군정의 종합기획·조정·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 나. 예산·투자심사·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 다. 군정평가·원가심사·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라. 감사 및 자치법규·소송에 관한 사항
- 마. 군 행정의 홍보 및 공보에 관한 사항
- 바. 규제개혁에 관한사항
- 바. 민원조정 및 제도개선과 정책만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농업정책과장

- 가. 농정시책·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 나. 농정성과분석 및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관한 사항
- 다. 고추브랜드육성 및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라. 농업생산 등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
- 마. 과수·화훼·채소 등 원예특작에 관한 사항
- 바. 농산물유통 및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
- 사. 귀농귀촌에 관한 사항

3. 축산치즈산림과장

- 가. 축산진흥 및 축산 경쟁력강화 등 축산경영에 관한 사항
- 나. 가축방역·축산물위생 등 가축관리에 관한 사항
- 다. 임실치즈산업, 브랜드,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등에 관한 사항
- 라. 임실치즈의 브랜드 관리, 치즈체험관광 등 치즈산업지원에 관한 사항
- 마. 치즈과학연구소·치즈테마파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바. 산림경영·경관조성 등 산림휴양에 관한 사항
- 사.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 아. 산지이용·전용 등 산림소득에 관한 사항

4. 문화관광체육과장

- 가. 문화재·공연·출판 등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 나. 관광에 관한 사항
- 다.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 라.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과장

- 가. 안전총괄·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
- 나. 재난예방·재해복구 등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 다. 하천 및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 라. 섬진댐 주변지역 지원·보상 등 섬진댐 개발에 관한 사항

6. 행정지원과장

- 가. 인사·조직관리·시책, 공무원교육훈련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 나. 후생복지·공무원노조지원 등 서무후생에 관한 사항
- 다. 인재양성 등 교육지원 및 애향장학금에 관한 사항
- 라.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타 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7. 재무과장

- 가. 지방세 부과 등 세정에 관한 사항
- 나. 세출예산집행 등 경리에 관한 사항
- 다. 지방세 징수 및 세외수입 징수 등 세입에 관한 사항
- 라. 국공유재산관리·청사관리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마. 주택가격평가 조사 등 과표에 관한 사항

8. 환경보호과장

- 가.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기후변화대응 등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나. 수질관리·대기보전 등 환경지도에 관한 사항
- 다. 일반폐기물관리·재활용 등 환경미화에 관한 사항
- 라. 축산폐수 및 생활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 마. 축산폐수 및 생활하수의 위생처리방법 연구
- 바. 처리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사. 그 밖의 축산폐수 및 생활하수의 위생처리에 관한 사항
- 아. 임실·오수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주민복지과장

- 가. 보훈·자활사업·장애인복지 등 복지기획에 관한 사항
- 나.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의료급여 등 복지서비스연계에 관한 사항
- 다. 국민기초수급자 관리·기초노령연금·장애연금 등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 라. 노인복지시설·노인일자리사업 등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 마. 외국인여성·다문화가정지원 등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 바. 청소년업무에 관한 사항
- 사. 청소년수련원에 관한 사항

10. 건설과장

- 가. 도로·지하수 관리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
- 나. 도시관리계획·공원·옥외광고물 등 도시업무에 관한 사항
- 다. 소규모숙원사업·농어촌도로 정비·지역개발 등 토목에 관한 사항
- 라. 농업생활용수개발·경지정리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마. 농촌권역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1. 지역경제과장

- 가. 전통시장활성화·에너지사업관리 등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 나.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공장관리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 다. 교통행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라. 청년행정인턴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 등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2. 민원봉사과장

- 가. 통합민원창구운영·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나. 개별공시지가·부동산실명제 등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다. 도로명주소사업·토지소유권관리 등 지적에 관한 사항
- 라. 건축인허가·건축물관리 등 건축에 관한 사항
- 마. 각종 생활민원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4조(설치) ① 법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8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임실군보건의료원(이하“의료원”이라 한다),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와 같다.

제5조(원장 등) ①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각각 원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소장을 둔다.

② 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제6조(소관사무) ① 보건의료원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7조(설치) ①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임실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에 둔다.

제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등 지도기획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업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
4. 농업 현장지원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5. 지역농업특성화 등 특화작목에 관한 사항
6. 자원식품에 관한 사항
7. 고추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8. 농기계임대사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

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제4장 사 업 소

제1절 상하수도사업소

제11조(설치)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상하수도사업소를 둔다.

② 상하수도사업소의 위치는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에 둔다.

제12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상수도 업무에 관한 사항
2. 하수도 업무에 관한 사항
3. 정수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2절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제14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이하 “시설관리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설관리사업소는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40에 둔다.

제15조(소장) 시설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소관사무)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문화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설운동장·문화체육센터·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선대관광지 문화관광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4. 대규모 건축을 수반한 토목공사 및 공사감독 지원 등 시설건축에 관한 사항

제5장 읍·면

제17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의 사무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직무) ①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9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임실군 귀농귀촌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축산치즈과장”을 “축산치즈산림과장”으로 한다.

(2) 임실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운영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유통업무 담당주사”을 “유통가공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3) 임실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지역농업특화사업단”을 “농업정책과”로, 제7조 제2항 중 “산업유통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제9조제2항 중 “주민생활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축산치즈과장”을 “축산치즈산림과장”으로 한다.
- (4)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문화관광산림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
- (5) 임실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문화관광산림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
- (6) 임실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
- (7) 임실군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문화관광산림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
- (8) 임실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0조 중 “주민생활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 (9) 임실군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주민생활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 (10) 임실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 (11) 임실군 여성복지상담소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주민생활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 (12) 임실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주민생활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 (13) 임실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주민생활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 (14) 임실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중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주민생활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보건사업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 (15) 임실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산업유통과”를 “농업정책과”로 한다.
- (16) 임실군 성평등 기본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주민생활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 (17) 임실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중 일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보건사업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 (18) 임실군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 (19) 임실군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중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이 “농업정책과장”으로, “주민생활복지과장”이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 (20) 임실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주민생활복지과장”이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 (21) 임실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중 “산업유통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별표1]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4조 관련)

|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
| 보건의료원 |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80(이도리 270-8) | 임실군 관내일원 |
| 청웅면 보건지소 | 임실군 청웅면 청웅로 143(구고리 223-6) | 청웅면 일원 |
| 운암면 보건지소 | 임실군 운암면 임운로 1886(쌍암리 819-1) | 운암면 일원 |
| 신평면 보건지소 | 임실군 신평면 석등슬치로 339(원천리 302) | 신평면 일원 |
| 성수면 보건지소 | 임실군 성수면 월삼로 356(양지리 1083-240) | 성수면 일원 |
| 오수면 보건지소 | 임실군 오수면 오수4길 9-3(오수리 345-8) | 오수면 일원 |
| 신덕면 보건지소 | 임실군 신덕면 수지로 102(수천리 502-6) | 신덕면 일원 |
| 삼계면 보건지소 | 임실군 삼계면 충효로 1284-8(삼계리 435-3) | 삼계면 일원 |
| 관촌면 보건지소 | 임실군 관촌면 사선1길 4(관촌리 206-1) | 관촌면 일원 |
| 강진면 보건지소 |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47-1(갈담리 281-1) | 강진면 일원 |
| 덕치면 보건지소 | 임실군 덕치면 인덕로 1400(회문리 930-1) | 덕치면 일원 |
| 지사면 보건지소 | 임실군 지사면 충효로 2451-5(방계리 896) | 지사면 일원 |
| 하운암 보건진료소 | 임실군 운암면 강운로 991-31(운암리 458) | 운암, 청운, 마암, 운중, 신기, 운정, 금기 |
| 신덕 보건진료소 | 임실군 신덕면 불재로 336(신덕리 240-8) | 학산, 물염, 수반, 신기, 조월, 월성, 사기 |
| 세심 보건진료소 | 임실군 삼계면 세심길 80(세심리 253-1) | 세심, 택승, 학정, 죽계, 숙호, 사오 |
| 사곡 보건진료소 | 임실군 덕치면 사곡1길 18-8(사곡리 401-22) | 안하, 하두, 신기, 자경, 양지, 가곡, 원치 천담, 구담, 평지 |
| 원산 보건진료소 | 임실군 지사면 원산3길 18-1(원산리 382-1) | 원산, 관기, 안하, 선천, 신천, 대정 |
| 신안 보건진료소 | 임실군 임실읍 신안2길 42-3(신안리 241) | 장재, 신기, 정촌, 금동, 낙촌, 현곡, 연화 |
| 북창 보건진료소 | 임실군 신평면 용암2길 5(용암리 100-11) | 북창, 죽치, 덕전, 피암 |
| 방수 보건진료소 | 임실군 관촌면 방수1길 16-17(방수리 748-7) | 방동, 막동, 하상, 황두 |
| 학암 보건진료소 | 임실군 운암면 학암2길 28(학암리 916-1) | 학암, 광석 |
| 지장 보건진료소 | 임실군 신덕면 지장1길 12(지장리 652-1) | 지장, 하촌, 중촌, 금정 |
| 오류 보건진료소 | 임실군 성수면 오류1길 33(오류리 42-2) | 오류, 대판, 덕치, 계월, 월평 |
| 송정 보건진료소 | 임실군 삼계면 충효로 1451(덕계리 55-2) | 음지, 중촌, 두월, 신기, 화촌, 너촌 |
| 신전 보건진료소 | 임실군 관촌면 신전4길 3-3(신전리 28-3) | 상월, 월은, 신전, 두기 |
| 둔기 보건진료소 | 임실군 오수면 둔기길 42(둔기리 138-6) | 둔기, 대정, 운교, 구장 |
| 선거 보건진료소 | 임실군 운암면 청운로 527(선거리 276-1) | 선거, 지천 |
| 봉천 보건진료소 | 임실군 오수면 봉천1길 7(봉천리 735-12) | 봉산, 종동, 평당, 오촌, 냉천 |
| 옥정 보건진료소 | 임실군 강진면 옥정호로 800-4(옥정리 244-7) | 옥정, 수방, 문방, 용수 |
| 학석 보건진료소 | 임실군 강진면 강진방현길 65(방현리 160-1) | 방현, 학석, 이윤, 율치, 하필 |
| 도봉 보건진료소 | 임실군 관촌면 도봉1길 8-18(도봉리 517-1) | 도봉, 병암, 가정 |
| 둔덕 보건진료소 | 임실군 오수면 둔덕2길 48(둔덕리 460-6) | 신기, 동촌, 방축 |

[별표2]

농업인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10조 관련)

|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
| 임실읍농업인상담소 |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371 (두곡리 42-1) | 임실읍 일원 |
| 청응면농업인상담소 | 임실군 청응면 구고 7길 1 (구고리 554-3) | 청응면 일원 |
| 운암면농업인상담소 | 임실군 운암면 상운길 28-10 (쌍암리 485-5) | 운암면 일원 |
| 신평면농업인상담소 | 임실군 신평면 석등슬치로 369 (원천리 212) | 신평면 일원 |
| 성수면농업인상담소 | 임실군 성수면 임진로 208-11 (양지리 1083-228) | 성수면 일원 |
| 오수면농업인상담소 | 임실군 오수면 오수로 195-60 (대명리 699-2) | 오수면 일원 |
| 신태면농업인상담소 | 임실군 신태면 수지로 36 (수천리 894-3) | 신태면 일원 |
| 삼계면농업인상담소 | 임실군 삼계면 충효로 1277 (삼계리 445-7) | 삼계면 일원 |
| 관촌면농업인상담소 | 임실군 관촌면 사선11길 4-1 (관촌리 398-1) | 관촌면 일원 |
| 강진면농업인상담소 | 임실군 강진면 강동로 1346 (갈담리 505) | 강진면 일원 |
| 덕치면농업인상담소 | 임실군 덕치면 회문2길 4 (회문리 169-2) | 덕치면 일원 |
| 지사면농업인상담소 | 임실군 지사면 방계2길 3 (방계리 588-5) | 지사면 일원 |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재정수반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인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정수반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 행정지원과장 김학성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5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시·군·구의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